다.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다.3.1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건진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 개요

명칭(상호)	(주)유비건설	금액내역	(1) 재 료 비	-
대 표 자	조 기 창			
현 장 명	서구 원창동 27번지 외 2필지 해체공사		(2) 관급자재비	-
현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7번지 외 2필지			
발 주 자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3) 직접노무비	-
공사 기간	2026.06.15. ~ 2026.07.20			
공사의 종류	1. 2종 시설물 2.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설공사 5. 천공기 사용공사 (10m 이상) 6. 항타 항발기 사용공사 7.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8. 높이 31M 이상인 비계 사용공사 9.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10.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11. 높이 2m 이상 흙막이 공사** 12.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 이상) 13. 복합형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합벽 지지대)		(4) 부대시설비	-
			계	200,000,000원 (VAT포함)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21,550,000원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4,550,000원
2.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비용	3,000,000원
3. 발파·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2,000,000원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관리대책 비용	3,000,000원
5. 안전 모니터링 설치 · 운용 비용	3,000,000원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3,000,000원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 운용 비용	3,000,000원
8. 기타	-
총 계	21,550,000

다.3.2 항목별 안전관리비 산출 근거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식	1		3,500,000원 (VAT 별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식	1		2,500,000원 (VAT 별도)	정부기술용역대가기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식	1		1,000,000원 (VAT 별도)	산출 근거 : 국토 안전관리원 공사금액에 따른 검토 비용 기준
취약 공종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식	-	-	-	

2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비용(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 점검 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비용)

① 규칙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⑤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 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y = y_1 + \frac{(y_2 - y_1)}{(x_2 - x_1)}(x - x_1)$$

여기서, x: 해당규격, x_1: 작은 규격, x_2: 큰 규격
y: 해당 공사비 요율, y_1: 작은 규격 요율, y_2: 큰 규격 요율

해 당 없 음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안전점검비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적용)

구분	세 부 내 용
산출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해 안전점검비용 산출 -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에 따라 특급기술자 이상이 점검하여야 함. - 기술자 노임단가는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제경비 및 기술료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중 110%, 기술료는 20%~40% 중 20% 적용하여 산출함.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4,467	461,459	455,331	467,217	456,237	584,019	447,658
특급기술자	401,407	360,108	343,079	373,353	362,012	463,039	357,676
고급기술자	335,379	311,965	315,288	310,884	323,993	395,526	301,863
중급기술자	300,463	300,452	283,343	295,138	272,129	363,751	261,545
초급기술자	263,602	248,432	249,574	235,459	246,584	297,437	229,278
고급숙련기술자	309,271	301,459	273,034	281,075	267,856	360,090	289,195
중급숙련기술자	241,305	246,556	234,317	250,087	222,995	350,319	226,344
초급숙련기술자	217,582	209,640	198,751	218,142	192,381	226,251	194,317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안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부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출내역

[별표8]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직 접 인 건 비	① 현장조사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373,353원	186,677원
	초급기술자 : 1인 × 0.5일 × 235,459원	117,730원
	② 자료정리, 보고서 작성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373,353원	186,677원
	초급기술자 : 1인 × 0.5일 × 235,459원	117,730원
	소 계	**608,814원**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669,695원**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255,702원**
총 계		**1,534,211원**
단 위 절 삭 금 액 (만단위 절삭)		**34,211원**
용 역 대 가 (부가세별도)		**1,500,000원**

정기 안전 점검 및 초기 점검 총괄 비용

공 종		규 격	금 액
가. 정기안전점검 대가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1차	1,500,000원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2차	1,500,000원
소 계			3,000,000원